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4.

발 의 자 : 백승아 · 김문수 · 강경숙
정을호 · 김영호 · 최기상
손명수 · 최혁진 · 문정복
김준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(이하 “학교전담경찰관”이라 함)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, 교육부장관,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6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
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05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
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
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6제1항 중 “경찰관”을 “경찰관(이하 “학교전담경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”을 “학교전담경찰관”으로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분리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,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의6(학교전담경찰관)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<u>경찰관</u> 을 둘 수 있다.	제20조의6(학교전담경찰관) ① -- ----- ----- ----- <u>경찰관(이하 “학교전담경찰관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분리 등 긴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교육부장관,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.</u>
<u>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<u>④ 학교전담경찰관</u> ----- ----- -----.